KMA 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㉾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삼구빌딩 7, 8층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/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장 이성민 [6574] 보험팀장 백영기 [6581] 팀원 서예진 [6548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813-15367호

시행일자 2021. 03. 16.

수 신 대한의학회장,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**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 안내**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84호(2021.03.15.)

2. 위와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, 이를 안내드립니다.

- 다 음 -

가. 주요내용

-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세부항목 변경 등 보완 관련 "환자평가표 파일" 서식개정 (서식버전 '090'→'091')

나. 시행일 : 2021년 5월 1일 진료분부터

붙임 : 보건복지부 고시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